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44
----------	-----

2012년 6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결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2년 6월 12일 회부
- 다. 상정결과 :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2년 6월 2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복지건강실장 김경호)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립병원으로서
- 지역사회 공공의료의 중추적 기능과 저소득층 및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제공으로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시민 의료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자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시설개요

- 시설명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1955. 6.18 영등포병원으로 개원)
-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425
- 시설규모 : 대지 24,573㎡, 건물 76,804㎡(본관, 동관, 별관, 신관)
- 허가병상 : 787명(24과)
- 인 력 : 현원 1,319명(의사251, 약사30, 간호사544, 의료기사148, 기타346)
- 위탁법인 : 서울대학교병원(대표 정희원)
- 위탁기간 : 2010. 1. 1 ~ 2012. 12. 31(3년간)

(2)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13. 1. 1 ~ 2015. 12. 31)
- 위탁업무
 - 시민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진료사업
 - 의료보호 및 행려환자 등 저소득층 시민 의료보장 및 공중보건 활동
 - 재난 시 응급의료 활동
 - 학생 임상 실습, 전공의 수련 및 임상 연구
 - 기타 공공의료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소요예산 : 11,521,804천원 (2012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호)

가. 위탁사무의 개요

- 보라매 병원은 시위탁사무로서, ‘진료사업’, ‘저소득층 시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공중보건 활동’ 등을 행하고 있음.
- 즉 보라매병원은 일반 민간병원과 같이 진료사업 등 병원운영에 관한 사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 공공병원으로서 저소득층 시민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특별사무를 별도로 수행하고 있음.
 - 보라매병원의 특별사무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과 관계된 것일 뿐 원칙적으로 환자의 치료라는 병원 고유의 사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보라매병원 위탁사무는 모두 기본적으로 병원 운영사무로 보아야 할 것임.

나. 민간위탁 지속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

- 병원운영사무가 민간위탁을 지속하는 대상사무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립병원을 현재와 다르게 서울시가 직영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위탁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결국 보라매병원의 운영형태를 결정하는 문제임.
 - 시립병원의 운영형태는 크게 직영, 특수법인화, 위탁이 있을 수 있다. 즉, ‘어린이 병원’처럼 직영하거나, 또는 ‘서울의료원’처럼 특수법인화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수탁기관이 누구냐에 따라, ‘북부병원’과 같이 특수법인(서울의료원)에 위탁하는 방식과 ‘보라매병원’이나 ‘백암정신병원’과 같이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이 있음.

- 학계의 연구를 참조하여 운영형태에 따른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우선 수익성 기준으로는 민간위탁방식이 직영 또는 특수법인화한 경우(지방공사 형태)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¹⁾, 다음의 의료복지적 관점²⁾에서 직영형태가 특수법인화한 경우(지방공사 형태)나 민간위탁한 경우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³⁾.

의료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는 민간위탁이 가장 높게, 직영형태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⁴⁾, 고객만족도는 직영인 경우가 가장 높게, 특수법인화한 경우(지방공사 형태)가 가장 낮게 나타났음⁵⁾.

- 종합해보면 수익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에서는 위탁운영이, 공공성과 고객만족도 측면에서는 직영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물론 위와 같은 학계의 논의는 어떤 특정시점에 특정 지표만을 가지고 상대적 평가한 것이므로 일정한 한계를 갖음.

○ 그런데 본 동의안과 같이 시립병원운영사무가 민간위탁 지속대상 사무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학계의 논의 외에도 현재의 수탁기관을 둘러싼 내·외부적 환경변화나 이해관계자의 요구도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임.

- 수탁기관이 현재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내·외부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병원사무의 특성상 현행 운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환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뢰보호나 예

1) 한인섭, 「지방공공병원의 조직유형별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1999.

2) 의료보호환자 비율을 가지고 평가했음.

3) 정운수·허만형, 「공립병원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분석」, 1999.

4) 김인·허용훈·이희태, 「지방공사 부산의료원의 경영성과 분석과 발전방향」, 1999.

5) 이상수, 「지방공공서비스의 성과평가-지방공공의료기관의 조직운영형태별 성과분석-」, 2000.

기치 않은 손해방지를 위하여 바람직하기 때문임.

예를 들어, 민간위탁 지속대상사무로 시의회 동의를 받지 못하여 직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면, 직영체제 전환 시까지 입원 및 치료중인 환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병원의 운영에 관한 내·외부적 환경변화 또는 주장 등을 살펴보면, ‘현재 위탁운영의 문제’라든가 ‘직영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 않은 바, 현행 병원운영사무를 그대로 민간위탁을 지속하는 대상사무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일치)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844
----------	-----

제출년월일 : 2012년 6월 8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립병원으로서
- 나. 지역사회 공공의료의 중추적 기능과 저소득층 및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제공으로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시민 의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개요

- 시설명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1955. 6.18 영등포병원으로 개원)
-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425
- 시설규모 : 대지 24,573㎡, 건물 76,804㎡(본관, 동관, 별관, 신관)
- 허가병상 : 787명(24과)
- 인력 : 현원 1,319명(의사251, 약사30, 간호사544, 의료기사148, 기타346)
- 위탁법인 : 서울대학교병원(대표 정희원)
- 위탁기간 : 2010. 1. 1 ~ 2012. 12. 31(3년간)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13. 1. 1 ~ 2015. 12. 31)
- 위탁업무
 - 시민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진료사업
 - 의료보호 및 행려환자 등 저소득층 시민 의료보장 및 공중보건 활동
 - 재난 시 응급의료 활동
 - 학생 임상 실습, 전공의 수련 및 임상 연구
 - 기타 공공의료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소요예산 : 11,521,804천원 (2012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제2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5호
- 민간위탁 추진현황
 - 제1차 1987. 10. ~ 1991. 12.31. 서울대학교병원 위탁 운영
 - 제2차 1992. 1. 1 ~ 1994. 12.31. 서울대학교병원 재위탁
 - 제3차 1995. 1. 1 ~ 1997. 12.31. 서울대학교병원 재위탁
 - 제4차 1998. 1. 1 ~ 2000. 12.31. 서울대학교병원 재위탁
 - 제5차 2001. 1. 1 ~ 2003. 12.31. 서울대학교병원 재위탁
 - 제6차 2004. 1. 1 ~ 2006. 12.31. 서울대학교병원 재위탁
 - 제7차 2007. 1. 1 ~ 2009. 12.31. 서울대학교병원 재위탁
 - 제8차 2010. 1. 1 ~ 2012. 12.31. 서울대학교병원 재위탁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市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대학병원급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고, 근무여건 등으로 우수 의료인력 수급에 지장이 있어, 시민 만족도가 저하되고 급성기 리더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어려움.
-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1항 및 제2항
 -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 2.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 3.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1항 제3호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5호
 -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기타사항 : 해당없음